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시설과장 윤 범 수)

### □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및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개인화물차량 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주차장별로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하고, 1년의 범위안에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천시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22조의2 신설)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상위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의 반발은 없는지 ?	○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
○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 해소방안 ?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이용실태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점차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임.
○ 건축허가시 건물내에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방법은 ?	○ 주변 300m내에 노외주차장에 본인 주차면을 확보하고 불가능하다면 시에 주차장 확보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방법이 있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9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출년월일 : 2006. 6.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및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개인화물차량 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주차장별로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하고, 1년의 범위안에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 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22조의2 신설)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로, “공영노외주차장을 6개월 단위로”를 “공영노외주차장 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까지 1년 단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3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

③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4조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29조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시설과
입 안 자	담당과장	윤 범 수
	담당팀장	윤 길 현
	담 당 자	김영철(320-2546)



현행	개정안
<p>물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u>공영노외주차장을 6개월 단위로</u>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의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p> <p>②제1항에 의하여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1의 비고 바목을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u>3개월</u>의 범위안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p> <p>③ (생략)</p> <p><u>&lt;신설&gt;</u></p>	<p>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자-----</p> <p>-----공영노외주차장 <u>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30</u> 까지 1년 단위로-----</p> <p>②-----</p> <p>-----1년-----</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 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p>

현행	개정안
	<p>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p> <p>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li> <li>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li> <li>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li> <li>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li> </ol>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6 1093 402 1137">&lt;신 설&gt;</p> <p data-bbox="199 1697 817 1944">제24조(보조의 대상)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 data-bbox="236 1966 466 2011">1.~3.(생략)</p>	<p data-bbox="869 295 1455 667">③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p> <p data-bbox="869 689 1455 1070">④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p> <p data-bbox="833 1093 1455 1137">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p> <p data-bbox="869 1160 1455 1675">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 data-bbox="833 1697 1455 1944">제24조(보조의 대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p> <p data-bbox="869 1966 1200 2011">1.~3.(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 ②(생략) ③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u>각호</u>의 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2. (생략)</p> <p>제29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생략)</p>	<p>제25조(보조금 교부 방법 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u>각 호</u> <u>의 어느 하나와</u> ----- 1.·2. (현행과 같음)</p> <p>제29조(용자금의 반환) ----- -----<u>각 호의</u> <u>어느 하나</u> ----- ----- 1.~3.(현행과 같음)</p>